

최종 승인일	2025. 6. 20.
작성부서	경영기획팀

---

**사외이사 독립성 및 다양성 정책**  
(Board Independence and Diversity Policy)

---

Rev.1

## 제1조. 목적

본 정책은 (주)세아제강(이하 '회사')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다양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,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, 주요 안건의 결정에 있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본 정책은 회사의 모든 이사회 구성원 및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정책에 적용합니다.

## 제2조. 기본 원칙

### ① 이사회 독립성 정책

회사는 「상법」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며,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합니다. 또한,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 외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·집행임원·감사로의 겸직을 금지합니다.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자 및 재임 사외이사의 독립성 수준을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후보자 및 재임 이사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외이사 후보자는 후보자에서 제외되고 재임 사외이사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.

- 1)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, 감사, 집행임원 및 피용자
- 2)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·감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
- 3)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·감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
- 4) 회사와 거래 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·감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
- 5) 회사의 이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·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·감사·집행임원 및 피용자
- 6)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·집행임원·감사 및 피용자[마목에 따른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,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·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, 합작법무법인,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,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]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·집행임원·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
  - 가)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(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) 또는 매출총액(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100분의 10

#### 이상인 법인

- 나) 최근 사업연도 중에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
- 다) 최근 사업연도 중에 회사가 금전, 유가증권,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(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)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
- 라)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회사가 자본금(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)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
- 마) 회사와 주된 법률자문·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,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·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, 합작법무법인,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, 회계법인, 세무법인,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

상기 요건 외에도, 이사회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#### ② 사외이사의 다양성 정책

회사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풍부한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「기업 지배구조헌장」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. 구체적으로,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 기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.

- 1) 성별: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원칙을 반영한 성(性)별이 다른 후보자
- 2) 연령: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이사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령대의 후보자
- 3) 기타: 국적, 인종, 종교 등의 항목을 고려함

#### 부칙

본 정책은 2024. 6. 28. 부로 제정하여 시행한다.

본 정책은 2025. 6. 20. 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